

정보화 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1. 02. 0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정보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 여기서 정보화란 신학사 행정 프로그램의 도입 및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과 관련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도입, 교재 등을 의미한다.

- ① 정보화 추진 관련 정책 결정 및 의견 수렴
- ② 정보화 추진 관련 사업계획
- ③ 본 운영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- ③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추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- 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는 기획예산부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6조(실무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8조(시한) 본 위원회는 정보화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78, 2011.2.9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